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6월 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립대학교에 총장 직속의 “인권센터”를 설립하여 학내 성평등 및 인권보호 기구·제도 강화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, 권익침해 시 신속하고 중립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서울시립대학교에 총장직속의 인권센터 설립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행정규제 신설·강화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(미첨부 사유서 첨부)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 대상임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 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갈등사항 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8. 5. 17. ~ 5. 23.) 결과: 제출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직속기관)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<u>제7조의2(직속기관) 대학교에 직속 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.</u>

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인권센터 설립·운영비

- 서울시립대학교 학내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, 권익 침해 시 신속한 해결과 구제를 위한 ‘인권센터’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
〈관련규정〉

제3조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인권센터 설립·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발생되나, 예상되는 비용 추계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

4. 작성자

- 조직담당관, 행정6급, 전서영 주무관(T.2133-6748)